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7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이형석·송갑석·문진석

민형배 · 장경태 · 이용빈

양향자 • 이병훈 • 윤영덕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함.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1조의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 3.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것
 -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 1 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 다.
- ①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 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제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 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 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 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 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 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 여야 한다.

8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